

2005년 7월 3일 시행  
제11회 법무사 제1차시험 문제  
(1교시)

|      |
|------|
| 문제책형 |
| ①    |

|      |                                             |
|------|---------------------------------------------|
| 시험과목 | 제1과목 (헌법, 상법) : 50문<br>제2과목 (민법, 호적법) : 50문 |
|------|---------------------------------------------|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05. 7. 4.(월) 10: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05. 7. 4.(월) 10:00 ~ 2005. 7. 8.(금) 17:00  
방법 : [대법원 홈페이지/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05. 7. 18.(월) 10: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 ※ 대법원 홈페이지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 【제1과목 50문】

### 【헌법 25문】

【문 1】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다음 중 현행 정부조직법상 위 국무위원의 순서를 올바르게 기술한 것은?

- ① 재정경제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 과학기술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 통일부장관 - 외교통상부장관
- ② 재정경제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 과학기술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 외교통상부장관 - 국방부장관
- ③ 재정경제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 과학기술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 통일부장관 - 국방부장관
- ④ 재정경제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 과학기술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 통일부장관 - 법무부장관
- 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 과학기술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 외교통상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문 2】 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③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정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④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문 3】 위헌법률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름)

-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 ②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다만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위헌심사의 대상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 ④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위헌제청 시점만이 아니라 위헌법률심판의 시점에도 충족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 ⑤ 사법작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신청주의의 원칙상,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그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심사하여야 한다.

【문 4】 관습헌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름)

- ①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전(憲法典)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되나,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 ② 관습헌법은 일반적인 헌법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③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의 하나라고 보았다.
- ④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어떠한 관행이 존재하고, 그 관행의 반복·계속성, 항상성, 명료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을 얻어 국민들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
- ⑤ 관습헌법사항은 헌법 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을 뿐 이러한 방법 이외에 관습헌법이 자연히 사멸하게 되는 등 그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문 5】 탄핵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이다.
- ②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범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범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 ③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탄핵심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
- ④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 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문 6】 우리나라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당원이 될 수 있다.
- ②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의 소추 의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③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잔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 ④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그 정당의 대표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 ⑤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취소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문 7】 헌법소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름)

- ① 어떠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 정책의 문제이므로, 국회의 입법부작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통치행위는 통치권자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므로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행정청의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하여는, 그것이 사실행위인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⑤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에 대하여 그 사건의 피의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문 8】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름)

- 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드시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형벌규정에 대한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문제된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에 대하여는 위임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무제한으로 인정될 수는 없으므로 입법자가 형벌법규를 입법함에서 있어서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문 9】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

- ①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은 영미법계에서 유래된 것으로 절차적 효력과 관계된 데 비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대륙법계에서 유래된 것으로 실체적 효력과 관계된다.
- ② 과태료처분을 받아 납부한 후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
- ③ 즉결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영미법상 인신보호영장제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헌법상 제도로 제헌헌법에 도입되었으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채택된 것은 아니었다.
- ⑤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

【문10】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①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의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결정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한다.
- ② 직업의 자유는 국민의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 ③ 법인도 직업수행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④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 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 ⑤ 직업수행(종사)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선택(결정)의 자유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욱 폭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문11】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름)

- ①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 ②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지 어떤 개별적인 사건에만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개별 사건 법률금지의 원칙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특정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곧바로 위헌을 뜻한다.
- ③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엄격 심사를 하여야 할 경우 중 하나로서, 헌법이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 또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의 경우를 들고 있다.
- ④ 검사가 어느 고소 사건을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소홀히 하는 등 잘못 다룬 끝에 불기소처분 하였다면, 이는 검사가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 그 고소인을 차별 대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또한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 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법률조항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비하여 그 이외의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문12】 다음 중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 명시된 표현이 아닌 것은?

-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 ②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 ③ 사회적 폐습과 불의의 타파
- ④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 ⑤ 기회의 균등

【문13】 현행 헌법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아닌 것은?

- ①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장
- ② 국회의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 ③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 ④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 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서 부서제도

【문14】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

- ① 헌법의 개정은 의식적인 헌법변경행위라는 점에서 헌법의 변경과 구별된다.
- ②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연성헌법을 경성헌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 ③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된 후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다음 대통령이 이를 공포한 때에 확정된다.
- ④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지 아니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헌법개정은 할 수 없다.
- 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을 할 수 있다.

【문15】 기본권의 충돌(상충)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

- ① 복수의 기본권주체를 전제로 한다.
- ② 생명과 인격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게 한다.
- ③ 사안과의 관련성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가장 강력한 기본권이 적용된다.
- ④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 기본권간에 형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대립되는 기본권이 반드시 상이한 기본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16】 법인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

- ① 법인도 정치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
- ② 독일기본법도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단체는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 ④ 헌법재판소는 국립대학교는 공권력의 행사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⑤ 헌법재판소는 성질상 허용되는 경우에는 정당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문17】 다음 중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교육의 전문성                      ② 교육재정
- ③ 의무교육의 무상성                ④ 대학의 자율성
- ⑤ 교원의 지위

【문1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지방세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회기 중에 지급되는 회기수당 이외에도 매월 의정활동비가 지급된다.

【문19】 다음 중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한이 아닌 것은?

- ① 계엄선포권                          ②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
- ③ 선전포고와 강화권                ④ 국무회의 주재권
- ⑤ 사면권

【문20】 다음 중 병역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상 31세가 되면 입영의무 등이 감면되나 해외체제를 이유로 병역연기를 한 사람에게 36세가 되어야 이에 해당되도록 한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 ③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 ④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진다.
- ⑤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문21】 다음 중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름)

- ① 증언의 거부                          ② 취재원묵비
- ③ 집총거부                              ④ 법인의 사죄광고 거부
- ⑤ 음주측정거부

【문22】 다음 중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한 것은?

- ① 국회의원의 제명                      ②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 ③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        ④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 ⑤ 대통령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

【문23】 다음 중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신의 자유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 ② 우편물과 유·무선 전화에 의한 전기통신의 자유는 보장되나 전자우편(인터넷 통신)의 자유는 아직 보장되지 않는다.
- ③ 외국인도 통신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④ 범죄수사의 필요에 의한 예외적인 감청의 경우에도 영장을 요한다.
- ⑤ 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의 비밀침해행위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한 통신의 비밀침해행위도 규율한다.

【문24】 다음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인 내용이다.
- 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의 서신교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수사기관이 면회실에서 형사피의자가 자신의 변호인과 접견할 때에 소속직원이 그 대화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④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 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문25】 다음 중 재산권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상속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객체가 아니다.
-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는 공용수용, 공용사용, 공용제한이 있다.
- ④ 헌법재판소는 국유의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다.
- ⑤ 헌법재판소는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폐지)상 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 【 상법 25문 】

【문26】 선박우선폭권과 선박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우선폭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저당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 ② 선박채권자의 우선폭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되므로 우선폭권 발생 즉시 그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선박채권자의 우선폭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④ 선박채권자의 우선폭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 ⑤ 동일 순위의 우선폭권이 경합한 때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문27】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영업양도에 따라 영업재산을 이루는 개개의 재산의 종류별로 필요한 이전행위(물권행위와 등기 또는 인도 등)를 할 필요 없이 영업재산으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 ②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부터營業을 양수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에 관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
- ③ 영업양도로 채무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양도인이 양도 전에 갖고 있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해 제3자가 보증을 한 경우, 양도인의 피보증인으로서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따라서 보증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더라도 양수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양도에 준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사실상營業을 중단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자가 양도인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얻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양수인의 소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문28】 상사채권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또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채당(替當)한 때에는 채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상인이 비상인에게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그 상인인 대주(貸主)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상인간의 거래로 인한 채무 외에 상인과 비상인간의 거래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도 연 6푼이다.
- ④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인 채권(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시효 5년보다 단기인 3년이다.

【문29】 선하증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법 제814조(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나,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선하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한 것만으로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2인 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④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운송물에 관한 처분도 선하증권으로써 하여야 한다.
- ⑤ 선하증권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선하증권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하지 않는 한 당연히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문30】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기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입하여 납입금으로 내고 설립등을 마친 후 은행으로부터 인출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경우, 주주의 납입금을 회사가 체당한 것으로 보고, 회사가 주주에 대해 납입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가장행위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발기인들이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 ② 발기인으로서의 법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재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 한하고, 실제 설립사무에 종사하느냐는 묻지 않는다.
- ③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상당한 가격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 ④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에 관한 조사를 위해 감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립의 무효도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함으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문31】 회사의 합병과 조직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병 당사 회사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일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 ②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가 존속 또는 신설 회사로 될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 ③ 주식회사에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별도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며,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 ④ 합병의 경우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이전행위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별도의 채무인수절차도 필요하지 않지만, 승계한 권리를 처분하기 위하여는 등기 등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할 경우가 있다.
- ⑤ 합병회사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사원 전원의 동의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문32】 상법상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합병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비록 합병회사가 아니더라도 상호에 합병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합자회사 또는 합병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개인 상인이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수만큼 서로 다른 상호를 선정하여 쓸 수 있지만, 회사의 경우는 수개의 영업이 있는 때라도 상호는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
-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⑤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상호만 따로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33】 주식의 양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명의개서를 마친 주식의 양도담보권자라도 담보권자일 뿐이므로 모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결권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 ②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株券)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권발행 전에도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 ③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주권의 반환이 없더라도 주식양수인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고 주식양도인이 주주권을 회복하지만, 그 회복된 주주권을 회사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 ④ 주식의 양도에 있어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 ⑤ 등록절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을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그리고 주식배당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문34】 주식회사의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신청인의 주장에 의해 지위가 다투어지는 이사와 회사가 공동 피신청인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 ③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 ④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常務)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⑤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또는 그 후임자가 한 대외적 행위는 무효이고 상대방이 선의라도 이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문35】 주식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거나 낮게 정할 수 있다.
- ②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대규모 재산의 차입,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이사의 보수 결정은 모두 이사회의 권한사항이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이러한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위한 회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출석이사의 수의 계산에 있어서 산입하지 않는다.
- ④ 주주총회는 그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총회의 보통결의로써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이사는 주주이어야 한다.

【문36】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계약이 성립된 다음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의 경우에 지는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 ③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이것이 보험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또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④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의가 없으면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문37】 백지어음과 백지수표의 보충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백지어음이 부당보충된 경우에 이러한 어음이 부당보충된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득한 자는 보충된 내용대로 권리를 취득하고 백지어음행위자는 어음소지인에게 부당보충의 항변을 하지 못한다.
- ② 만기 이외의 사항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 등 상환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적법하게 보충권을 행사하여 상환청구(소구)할 수 있다.
- ③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만기나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 ④ 백지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백지 부분에 대하여 어음 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충권을 행사하여 발행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⑤ 국내어음(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의 경우에는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 없다.

【문38】 다음은 전환주식과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전환사채의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도 회사의 재산과 자본에는 변동이 없다.
- ②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사항에 관하여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는 특별결의로써 정하여야 한다.
- ③ 전환주식은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전환청구가 가능하지만, 전환사채는 주주명부폐쇄기간에는 전환청구가 불가능하다.
- ④ 전환사채는 전환청구 즉시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결과 사채권자는 그 지위를 상실하고 주주가 된다.
- ⑤ 통설에 의하면 전환주식의 경우 전환한 주식에 대해서는 재발행을 할 수 없다.

【문39】 다음 중 지배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배인은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이사도 지배인이 될 수 있다.
- ②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없으므로, 본점의 총지배인이라고 하더라도 지점의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권한은 없다.
- ③ 공동 지배인은 공동으로만 영업주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등기된 공동지배인 중 1인에 대하여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영업주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효력이 있고 다만 영업주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 ⑤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재판상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문40】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 ①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② 주주총회소집청구권
- ③ 대표소송제기권      ④ 회계장부열람권
- ⑤ 회사정리개시신청권

【문41】 어음의 위조변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어음을 변조한 어음소지인은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금원을 지급하고 약속어음을 취득한 때에 그 손해액은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 아니라 그 어음의 액면금액이다.
- ③ 판례에 의하면 배서인이 자신의 배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그 위조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조를 주장하는 배서인이 부담한다.
- ④ 판례에 의하면 발행이 위조된 경우에는 어음에 배서한 자도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판례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배서가 그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 보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조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42】 어음 및 수표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어음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지급거절증서작성이 면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 ②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③ 판례에 의하면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이다.
- ④ 수표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⑤ 어음의 배서인의 재소구권은 어음을 환수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43】 상법상 생명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도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 ②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 ③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이 보험사고인 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고, 만약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④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자로 정해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보험계약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 ⑤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의 발생 없이 보험기간이 종료한 때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문44】 다음 부실의 등기(상법 제39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의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 ② 합병회사에 있어서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 과실의 유무는 그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 ③ 부실등기가 등기신청권자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39조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 ⑤ 부실의 등기를 한 자도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등기의 내용이 사실과 상위함을 주장할 수 있다.

【문45】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감사는 단독기관이므로, 각자가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한다.
- ② 회사설립시 최초의 감사의 선임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감사를 선임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감사를 선임한다.
- ③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⑤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식 전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문46】 다음은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든 것이다. 적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때
- ②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 ③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 ④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⑤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문47】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결의에 참가한 경우, 회사의 임원이 이유 없이 주주의 발언을 금지시킨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총회가 소집된 경우, 주주에게 추가출자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된다.
- ②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회사의 해산, 회사의 합병,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 ③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 결의를 요하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도록 할 수 없다.
- ④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⑤ 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도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한다.

【문48】 다음 중 환어음의 유익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                      ② 발행지
- ③ 만기의 표시                                                      ④ 지급지
- ⑤ 환어음 문구

【문49】 주식회사의 청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청산중에도 주주총회와 감사는 그대로 존속한다.
- ② 청산중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효력이 없다.
- ③ 주식회사가 해산되면 이사는 원칙적으로 모두 청산인이 되기 때문에 청산인은 해산 전 이사와 동일한 범위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 ④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이후에는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청산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문50】 횡선수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수표의 발행인뿐 아니라 소지인도 수표에 횡선을 그을 수 있다.
- ② 일반횡선은 특정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특정횡선은 일반횡선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 ③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에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 이외의 자를 위하여 횡선수표의 추심을 하지 못한다.
- ④ 어음교환소에 있어서의 추심을 위하여 제2의 횡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 【제2과목 50문】

### 【 민법 40문 】

【문 1】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바른 것은?

- ① 미성년자가 부담 없는 증여를 수락하는 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② 혼인한 미성년자라도 협의상 이혼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상계할 수 있다.
- ④ 미성년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매매계약이라면 이를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다.
-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재산행위는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문 2】 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결국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어 유효하게 된다.
-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는 그 권리의무를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 ④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지는 못한다.
- 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별도의 특약을 할 수는 없다.

【문 3】 권리남용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①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사정이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처처도 없는 아버지와 그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자기 소유 주택의 명도 및 퇴거를 청구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②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백화점의 부도로 인하여 백화점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백화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상계할 목적으로 백화점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액면가에 훨씬 미달하는 가격으로 취득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토지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⑤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문 4】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고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이상 제3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②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③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 ④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 ⑤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확정판결 등이 인정한 통행장소와 다른 곳을 통행로로 삼아 다시 통행권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문 5】 공탁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②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③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라도 당해 변제공탁이 신의칙상 유효로 되지는 아니한다.
- ⑤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현실제공하지 아니하고 바로 공탁할 수 있다.

【문 6】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③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⑤ 과실로 피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문 7】 가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 ②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히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 ③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본등기는 항상 유효하게 된다.
- ④ 본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의 가등기권리자라 하더라도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있다.
- ⑤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가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문 8】 다음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②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③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인 차임연체는 연속해서 2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것은 물론 연속해서 연체하지 않더라도 연체차임이 2기분에 이를 때도 포함된다.
- ④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종료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해지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문 9】 다음 중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아니한 것은?

-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기간 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②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③ 채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④ 채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문10】 다음에서 대법원 판례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 ①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
- ②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 ③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또는 약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원 지급의무
- ④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⑤ 토지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문11】 점유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아니한 것은?

- ① 악의의 점유자는 점유의 회복자에 대하여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12】 다음 중 우리 민법상 순수한 무과실책임주의를 채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점유자의 책임
- ②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소유자의 책임
- ③ 동물의 가해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
- ④ 수급인의 행위로 인한 도급인의 책임
- ⑤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책임

【문13】 이행기와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② 채무이행의 확정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③ 채무이행의 불확정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④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후 그 기간을 경과하여야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⑤ 지시채권은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문14】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 ①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 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④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손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 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15】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사용자에게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그 감독자만이 배상책임을 진다.
- ②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③ 심신상실자가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④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와는 달리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문16】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아니한 것은?

-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은 없다.
- ④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한 매도인에 대한 담보책임을 구하는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문17】 유류분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 ① 피상속인의 부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 ②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 ③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산입된다.
- ④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 유증에 대하여는 증여를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문18】 부양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아니한 것은?

- ①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② 부양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 되어 재산권적 성격을 갖게 되므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 ③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④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⑤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하고, 이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 의무자를 선정할 수 있다.

【문19】 대습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상속인이 될 자가 직계존속인 때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음이 규정된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 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

【문20】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아니한 것은?

- 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②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 ③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등기를 하여야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 ⑤ 공유물분할의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문21】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아니한 것은?

- 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②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까지 알 것을 요한다.
- ③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만 하고,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는 없다.
- ④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 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2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② 기본적인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 ③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 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⑤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문2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설, 판례에 의함)

- 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은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③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
- ④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은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 ⑤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취소권자는 그 단독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취소권을 행사한다.

【문24】 유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 ①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된다.
- ②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그 유언장이 증인 2명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도 아니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방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③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및 성명을 자서(自書)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복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25】 전세권에 대한 내용 중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전세금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로서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증금으로서의 성질도 갖는다.
- ②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③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 ④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하므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문26】 민법이 규정하는 상린관계의 내용 중 옳지 아니한 것은?

- ① 원칙적으로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 ②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 ③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 ④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⑤ 경계로부터 3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문27】 혼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 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 ④ 처(妻)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夫)가 처(妻)의 가에 입적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부간의 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
- ⑤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문28】 상계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되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 ②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으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은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도 채권자는 상계할 수 없다.
- ④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⑤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29】 법인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 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법인과 함께 대표자 개인도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직접 그 사단의 이름으로 부동산의 등기를 할 수 있다.
- ③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 ④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30】 첨부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① 동산과 동산이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 ②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그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 ③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동산의 소유자가 혼화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는 혼화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 ⑤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문31】 다음 중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 ① 건물의 표시의 변경등기                      ② 전세권설정등기
- ③ 판결에 의한 등기                              ④ 소유권보존등기
- ⑤ 상속으로 인한 등기

【문32】 저당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 ①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한다.
- ②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선순위저당권은 소멸하며 그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 ③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친다.
- ④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⑤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문33】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비진의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②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통정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⑤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 제3자의 선의·악의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문34】 불용통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불용통물에는 공용물, 공공용물, 금제물 세 가지가 있다.
- ②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모두 공용물이다.
- ③ 공공용물이란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 ④ 금제물은 법령에 의하여 거래가 금지된 물건을 말한다.
- ⑤ 금제물에는 소유 내지 소지까지 금지되는 것도 있다.

【문35】 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민법상 조합에는 법인격이 인정된다.
- ② 조합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이다.
- ③ 민법상 조합원의 인원수 상한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다.
- ④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재산이다.
- ⑤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도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문36】 연대채무자의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 중 절대적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변제, 대물변제, 공탁                      ② 채권자지체
- ③ 상계                                              ④ 갹개
- ⑤ 시효이익의 포기

【문37】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원본채권 전액이 피담보채권으로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원본의 일부로써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것도 상관 없다.
- ② 민법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 ③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즉 지연배상(지연이자)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3년분에 한하여 피담보채권으로 하고 있다.
- ④ 위약금은 등기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다.
- ⑤ 저당권실행비용도 피담보채권이 된다.

【문38】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을 임의법규라고 한다.
- ② 강행법규는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이다.
- ③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이라는 문언이 있는 규정은 임의법규이다.
- ④ 오늘날은 강행법규가 임의법규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 ⑤ 사회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 가족관계질서의 유지에 관한 규정,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 등은 강행법규로 볼 수 있다.

【문39】 소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다.
- ② 무이자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대주가 교부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주가 차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의 발생요건은, 무이자 소비대차이든 이자부 소비대차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 ④ 목적물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소비대차에 이자 약정이 있든 없든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 ⑤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문40】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건변동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상속은 민법 제187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된다.
- ② 민법 제187조는 판결을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건변동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데, 여기서 판결은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 모두를 의미한다.
- ③ 공용정수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된다.
- ④ 건물신축으로 인한 소유권취득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건변동사유의 하나이다.
- 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취득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건변동사유의 하나이다.

## 【 호적법 10문 】

【문41】 다음은 개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 ①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거나 그 액면상당의 현지화를 재외공관장에게 납부하여도 무방하다.
- 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호적상의 성명과 새로운 출생신고에 의하여 생부의 호적에 입적되는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개명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③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후 한자이름을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외국법원에서 개명허가판결(결정)을 받아 그 판결(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⑤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호적상 기재된 이름이 상위하여 잘못된 경우에는 호적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문42】 호적부 등의 공개 및 그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아니면 누구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호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 등을 교부청구할 수 있고, 수수료 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그 송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
- ② 호적부 열람, 호적 등·초본의 교부청구인은 호주나 가족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시 그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③ 호적 등·초본의 교부청구 등은 대리인(또는 대행자)에 의하여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실제 출석하여 청구하는 대리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그 청구사유의 기재 여부도 신청인을 기준으로 하므로, 위임인(또는 본인)이 호주 또는 가족이더라도 신청인이 호주 또는 가족이 아닌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④ 대리인(또는 대행자)이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청구를 할 때 위임인(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우편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등도 첨부하여야 하고, 호적판서의 장은 우편에 의한 청구인이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

【문43】 호적신고와 관련한 다음 각 신청 내지 신고의 기간만료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모(母)가 자(子)의 부(父)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2005. 3. 17.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고 2005. 3. 28. 그 판결정본이 송달되었다면, 모(母)는 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관할 가정법원에서 2005. 1. 21. 협의이혼확인을 받고 같은 날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다면, 당사자 일방의 이혼의사의 철회가 없는 한 협의이혼신고는 그 확인서 등본을 교부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2005. 2. 12. 발견된 사체의 사망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2005. 2. 22. 사망자의 시·읍·면장에게 보고한 후, 2005. 3. 4. 사망자의 동거친족이 사망자의 신원을 인식하였다면, 그 동거친족은 사망자를 인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여 2005. 2. 23.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2005. 3. 11. 그 등본을 받았다면,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창성(創姓)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호적법에 정한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2005. 3. 15.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한다면, 그 이의제기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문44】 다음 중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신고는?

- ① 호주에 대한 실종신고의 재판이 확정된 후의 호주승계신고
- ②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여 후견이 종료된 경우의 후견종료신고
- ③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입양을 하고 입양인증서등본을 작성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하는 입양신고
- ④ 재판상 이혼의 신고
- ⑤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의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

【문45】 다음은 이혼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 ① 재외공관의 장이 호적법 제39조, 제79조,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서를 적법한 것으로 심사·수리한 후에 당사자 일방이 이혼의사가 없다고 그 신고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도 수리된 이혼신고서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송부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기록은 그 처리내용을 구별함이 없이 1년간 보존하며, 그 기록을 폐기할 때에는 확인서원본을 별도로 보존하지 않는다.
- ③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한 후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 ④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당사자 일방이 제출할 수 있다.
- ⑤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당사자는 협의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협의이혼철회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문46】 다음은 호적신고의 수리와 불수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 ① 혼인신고 중 남편과 그 부(父)의 성(姓)이 다른 경우에 호적에 착오 있는 것이 명확할지라도 당사자가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혼인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 ② 본적지의 호적관서에서 중혼이 수리되어 본적지 호적관서로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그 호적신고에 따른 호적기재를 하여야 한다.
- ③ 법정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도 형법상 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가 되는 허위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 ④ 사망자와 한 혼인신고가 본적지의 호적관서에서 수리되어 송부된 경우에 본적지 호적관서의 호적공무원은 그 수리처분을 불수리로 변경하고 그 뜻을 고지부에 등재한 뒤 신고(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혼인신고서에 첨부한 처의 호적초본에는 본의 기재가 없어도 신고서에 본을 기재할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문47】 다음은 인지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 ①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인지신고인이 질병 기타 사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없다.
- ③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부(父)로부터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를 할 수 없다.
- ④ 태내에 있는 자(子)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母)의 성명 및 본적을 기재하고 인지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생모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의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48】 협의상 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당사자 쌍방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이다.
- ②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③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 쌍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한 경우 반드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그 불출석 사실을 기재한 기일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 일방은 본적지에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을 제출하고, 다른 일방은 주소지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 어느 경우에도 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보고 그 효력을 인정한다.
- ⑤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분실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언제든지 관할 가정법원에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라면, 그 확인 법원에 보관 중인 확인서원본에 의하여 확인서 등본을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문49】 국제호적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무례를 따름)

- ① 한국인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서에 현지 출생시각만을 기재한 경우 호적공무원은 그 환산된 한국시각을 함께 기재하도록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수리하였을 경우 세계 각 지역의 시차대조표에 의하여 한국시각을 환산하여 호적부의 “출생”란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된 호적을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추완신고 내지 호적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혼판결문을 분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혼 신고서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생략할 수 없다.
- ④ 한국에서 한국인과 혼인하는 미국인이 주한 미군인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하여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 장교(법무관)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 ⑤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를 불문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문50】 친권자 지정과 관련한 2005년 개정 민법 및 개정 호적예규를 설명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개정 민법에서는 혼인의 취소 또는 재판상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 ③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가 동일한 때에는 그 성립 또는 접수 순위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에 기하여 기재하되, 협의에 의한 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하나, 협의지정의 신고에 의한 기재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재판지정의 신고에 의한 기재를 하지 아니한다.
- ④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가 서로 다른 때에는 그 성립 또는 접수 순위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에 기하여 기재하되, 협의지정에 의한 신고에 의한 기재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말소하고, 재판지정의 신고에 기하여 기재한다.
- ⑤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친권자변경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협의에 의한 친권자변경신고가 있을 경우 이를 수리할 수도 있다.



2005년 7월 3일 시행  
제11회 법무사 제1차시험 문제  
(2교시)

|      |
|------|
| 문제책형 |
| ①    |

|      |                                                      |
|------|------------------------------------------------------|
| 시험과목 | 제3과목 (형법, 비송사건절차법) : 50문<br>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50문 |
|------|------------------------------------------------------|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05. 7. 4.(월) 10: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05. 7. 4.(월) 10:00 ~ 2005. 7. 8.(금) 17:00  
방법 : [대법원 홈페이지/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05. 7. 18.(월) 10: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 ※ 대법원 홈페이지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3과목 50문】

### 【 형법 35문 】

【문 1】 형의 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 ③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 ⑤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문 2】 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②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 ③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야 한다.
- ⑤ 형법 제37조 후단이 규정하는 경합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만을 말한다.

【문 3】 공갈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 ③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 ④ 14세 또는 15세 되는 아이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면 이는 공갈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준사기죄에 해당한다.
- ⑤ 공갈죄에는 상습범과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모두 있다.

【문 4】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다음과 같이 경합된 때 올바른 가중, 감경의 순서는?

- ①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 누범가중 - 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 - 경합범가중 - 작량감경 - 법률상 감경
- ② 누범가중 -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 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 - 법률상 감경 - 경합범가중 - 작량감경
- ③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 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 - 누범가중 - 법률상 감경 - 경합범가중 - 작량감경
- ④ 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 - 누범가중 -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 경합범가중 - 작량감경 - 법률상 감경
- ⑤ 누범가중 -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 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 - 경합범가중 - 법률상 감경 - 작량감경

【문 5】 몰수와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②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는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죄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 ③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
- ④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몰수나 추징은 할 수 있다.
- ⑤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문 6】 방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방조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 ②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중범의 행위이므로 중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 ③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 ④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⑤ 정범이 실행의 착수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도 이에 가공하는 행위는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문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면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 ③ 피고인이 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받은 자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 가사 그 주식양도가 주권발행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법 제335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지라도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허위의 주권발행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 ⑤ 공문서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는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문 8】 사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② 가계수표 발행인이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수표상의 채무를 면하여 그 수표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 ③ 토지의 공유자 겸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그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매도가격 및 처분기한을 특정하여 처분권한을 위임받고 그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일체의 경비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인이 위 매도위임가격보다 훨씬 고가로 매도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위임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 ④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의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신용카드의 가맹점주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진표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회사에게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문 9】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의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 죄의 관계는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작성한 회사의 문서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를 한 후 원본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본만 가져간 경우, 그 회사 소유의 문서의 사본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카페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그 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있던 정기적금통장 등을 꺼내 들고 카페로 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 준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소지(점유)를 침해하고, 일단 피고인 자신의 지배 내에 옮겨졌다고 볼 수 있으니 절도의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라고 할 것이다.
- ⑤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놓자 이를 교부받아 가로챈 사안에서,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측에 전달하는 것으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부측 접수대에 교부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문10】 강도의 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촉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 ② 형법 제334조 제1항 소정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 ③ 강도상해죄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것인데 반하여 장물취득죄는 위와 같은 강도상해의 범행이 완료된 이후에 강도상해죄의 범인이 아닌 피고인이 다른 장소에서 그 장물을 교부받았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⑤ 술집에서 피고인과 술집 주인 두 사람 밖에 없는 상황에서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술집 주인을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던 현금을 탈취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문11】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 ④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허위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면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⑤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모 소유인 것으로 사칭하면서 모의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저지하였다면 이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

【문12】 뇌물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여도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뇌물이 된다.
- ② 공무원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의 일부를 받은 경우, 그 금원의 성격은 그 성질이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 이익분배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로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한다.
- ④ 제3자가 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알선의뢰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알선행위자에게 전달하였다면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알선수죄에 해당한다.
- ⑤ 정치자금,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한다.

【문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을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자동차
- ② 피고인이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실탄이 장전되지 아니한 공기총
- ③ 길이 100cm, 굵기 4cm 내지 5cm의 각목
- ④ 프로권투선수의 주먹
- ⑤ 당구큐대

【문14】 배임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②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 ③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중재죄는 별개의 범죄로서 배임중재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그와 별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과 공범으로서 업무상 배임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다.
- ④ 배임죄의 주체는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고, 나아가 업무상 배임죄에서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으나, 사실상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⑤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위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따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문15】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 ②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의 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오신케 함으로써 예금의 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범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장물의 단순한 사후처분과는 같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 ③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피고인은 강도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④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
- ⑤ 발매할 권한 없이 발매기를 임의 조작함으로써 유가증권인 리프트탑승권을 위조하였다는 정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였다면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조된 유가증권인 리프트탑승권에 대한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

【문16】 형법상 자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 ④ 피고인이 자수한 경우 법원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 ⑤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에는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17】 판례에 의할 때 상상적 경합이 아닌 것은?

- ① 당좌수표를 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 ②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 작성죄
- ③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또는 단순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 ④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 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동화변조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동화변조 및 동행사죄
- ⑤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문18】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온 경우, 절도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 ③ 협박의 실행의 착수가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해약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기수에 이른 시기가 주간이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야간협박죄에 해당한다.
- ④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라면,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⑤ 중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

【문19】 형법의 시적·장소적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설명은? (판례에 의함)

- ①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② 범죄행위시와 재판시의 중간에 수차 법령개폐로 인한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개폐된 법령 전부를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④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 ⑤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문20】 작량감경에 관한 아래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만을 작량감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양쪽 모두 감경하여야 한다.
- ②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면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무기징역형을 작량감경하는 경우 경합범가중사유나 누범가중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15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 ④ 소년법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부정기선고형의 상한이 아울러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 ⑤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우선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 작량감경은 이와 같은 법률상 감경을 다하고도 그 처단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 옳다.

【문21】 다음 중 형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는?

- ① 수도불통죄
- ② 유가증권위조죄
- ③ 현주건조물방화죄
- ④ 기차교통방해죄
- ⑤ 특수도주죄

【문22】 명의신탁과 횡령죄에 관한 판례이론 중 가장 틀린 설명은?

- ①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을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②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을 시행 이후의 경우임).
- ④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낙찰을 받아 입찰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 ⑤ 명의수탁자로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등기명의자가 명의이전을 거부하면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진 후에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문23】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위조사문서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②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더라도 우송한 때에 위조문서행사죄의 기수가 된다.
- ③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④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 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번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 ⑤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문24】 다음 중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 ②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 중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③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게에는 그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④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정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문25】 준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 ①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며,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준강도죄의 기수·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규정의 문언 및 미수론의 법리에 부합한다.
- ②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절도범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③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가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발로 차며 늑골 9, 10번 골절상 등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중상을 입힐 정도로 심한 폭력을 가해오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영겁결에 술뚜껑을 들어 위 폭력을 막아 내려다가 그 술뚜껑에 스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준강도상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④ 절도가 절도행위의 기회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가 성립되고 이로써 상해를 입혔을 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 ⑤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문26】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보호관찰에 관하여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의 전과사실을 토대로 동 법 소정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동일한 행위로 거듭 처벌하는 것에 해당한다.
- ③ 대법원은 판례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판례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④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명령 입력행위를 구형법(2001. 12. 29. 법률 제6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의2 소정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유추적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적용 범위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국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제18조 제3항(선거법과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선거법 재판절차에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문27】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①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 ②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준 것을 믿고 채광작업을 위하여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 ③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러시아 국적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그들을 유혹업소에 보내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다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외국인공연추천세칙에 관한 통지를 받고 나서야 외국인연예인의 관광업소 공연허가 신청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던 경우에는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⑤ 가감삼십전대보초와 한약 가지 수에만 차이가 있는 십전대보초를 제조하고 그 효능에 관하여 광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이전에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피고인이 비록 한의사 약사 한약업사 면허나 의약품판매업 허가가 없이 의약품인 가감삼십전대보초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28】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사람을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유기하는 행위
- ② 예금통장과 인장을 갈취한 후 예금 인출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
- ③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
- ④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갑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을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갑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와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의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행위
- ⑤ 대마를 절취한 후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문29】 소송사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어긋나는 것은?

- ① 피고인이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된다.
- ② 일방적인 권리주장을 기재한 통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후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피고가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④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 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문30】 판례상 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경우는?

- ① 이미 다른 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자기명의의 문서를 무효화시킨 경우
- ② 판결에 의하여 명도 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버림으로써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때
- ③ 회사의 경리사무 처리상 필요불가결한 매출계산서, 매출명세서 등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그 문서들을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 ④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어음의 액면금과 지급기일을 개서하여 주겠다고 하여 위 어음을 교부받은 후 위 어음의 수취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추가로 기입하여 위 어음배서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한 경우
- ⑤ 공중전화기가 고장 난 것으로 생각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선코드를 빼고 이를 떼어낸 경우

【문31】 감금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①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가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감금죄 및 감금치상죄가 성립한다.
- ②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는 성립한다.
- ③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④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 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주먹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다음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감금행위가 중단된 경우 감금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흡수된다.

【문32】 중지미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 중 틀린 것은?

-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용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준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에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이를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 ⑤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경우에는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33】 무고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한다.
- ②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 ③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34】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으로 짝지은 것은?

- ① 농아자 - 불능미수
- ② 불능미수 - 중지미수
- ③ 농아자 - 심신미약
- ④ 과잉방위 - 심신미약
- ⑤ 과잉방위 - 자수

【문35】 피해자 A는 뇌수술에 따른 뇌부종으로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호흡보조장치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불치의 식물인간상태였다. 이에 피해자의 처 갑은 의사인 을에게 더 이상의 치료비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을은 피해자 A를 집으로 퇴원시킬 경우 호흡이 어려워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이를 만류하였으나 갑의 강력한 퇴원요구에 못이겨 피해자 A를 집으로 퇴원시키는 것을 허락하였고, 피해자 A는 집으로 퇴원하여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였다. 갑과 을의 죄책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갑의 행위는 경제적인 곤궁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② 갑은 살인죄, 을은 살인방조죄에 해당한다.
- ③ 갑과 을은 모두 살인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 ④ 갑과 을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무죄이다.
- ⑤ 갑은 살인죄에 해당하나 을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무죄이다.

## 【비송사건절차법 15문】

【문36】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사건에 관한 기술이다. 다음 중 타당한 것은?

- ① 주식은 액면미달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함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고 이사회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액면미달발행이 가능하다.
- ②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관할하며, 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③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 및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⑤ 액면미달발행 인가사건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문37】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의 등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술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 ①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닌 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업소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외국회사의 한국에서의 대표자에 2인의 외국인을 공동대표자로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할 경우, 기존 대표자와 추가되는 외국인 2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는 외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본점의 대표이사와 국내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다른 임원(이사, 감사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 ④ 외국회사는 한국내 영업소 소재지에서 영업소설치등기를 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 ⑤ 한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의 영업소등기부에는 그 회사의 한국 외에 둔 지점 또는 영업소도 등기하여야 한다.



【문38】 법인에 관한 사건의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① 임시총회소집 허가 신청을 기각·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 ② 임시의사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관할로 한다.
- ③ 임시의사는 선임의 사유가 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은 포괄적으로 그 권한을 갖는다.
- ④ 임시총회소집의 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자는 감사에 한한다.

【문39】 주식회사 신설합병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① 신청서에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신청서에 정관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③ 절차상 일단 해산등기를 하고 설립등기를 한다.
- ④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동일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창립총회 의사록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40】 주식회사 청산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판례에 의하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가 청산인을 1인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 ②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이 청산인 선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③ 정관에 의하여 청산인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되 청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④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등기 용지 중 해산에 관한 란에 이를 기재한다.
- 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문41】 등기의 경정과 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등기관은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착오나 빠진 것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지체 없이 등기를 한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등기관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 사건에 대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42】 주식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그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 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 ③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 ④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의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을 한 은행이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을 맡은 은행과 상이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주권제출공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이 증명서에 갈음하여 주권제출공고절차 생략에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문43】 다음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 중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에 공통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 ①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 ② 주식청약서
- ③ 발기인이 이사회 감사를 선임한 경우 그에 관한 서면
- ④ 창립총회 의사록
- ⑤ 법원이 감사인의 보고서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한 결과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변경 발기인에게 통보한 경우 그 재판의 등본

【문44】 과태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주무관청이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2차적으로 그 당부를 심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그 이의를 인용하거나 기각한다.
- ② 과태료 사건은 직권에 의하여 개시된다.
- ③ 법원이 재량으로 정식절차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약식절차에 의할 것인지를 정한다.
- ④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⑤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문45】 다음 상법 제6조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① 무능력자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 ②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③ 법정대리인도 등기사항이다.
- ④ 영업소별로 각 1개씩 등기부를 개설한다.
- ⑤ 영업의 종류별로 각 1개씩 등기부를 개설한다.

【문46】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의 토지의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대한민국 내의 주소 및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②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토지의 관할에 의문에 있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관할법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하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변호사가 아닌 자도 대리를 영업으로 하지 않으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 ⑤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문47】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는 채권이 이행기에 도달하기 전에도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을 재판상의 대위의 신청이라고 한다.
- ② 재판상의 대위의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 그 채권이 기한 전이라는 것만 소명하면 된다.
- ③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을 고지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의 처분을 할 수 없다.
- ④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 및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 ⑤ 재판은 공개되며, 검사는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문48】 다음 인감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① 지배인은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아닌 이사도 인감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인감대지가 오손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인감의 개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임의대리인이 인감증명을 청구할 때에는 그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 ⑤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인감증명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문49】 상업등기신청에 관한 등기관의 조치 및 이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등기관은 일정한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③ 등기관의 등기신청각하결정에 대해서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의신청서는 등기관 소속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 ⑤ 등기관은 등기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50】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부재산약정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夫)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 ② 부부재산의 약정은 혼인성립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부부 상호간에도 그 효력이 없다.
- ③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 ④ 등기소에는 부부재산약정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등기신청서에는 부부재산약정서 또는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과목 50문】

### 【부동산등기법 30문】

【문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관련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인이 등기관리자로서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③ 일본국 관공서가 발급한 서면에 국적이 조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하여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가 부여한다.
- ⑤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그 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 또는 대위채권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2】 토지 또는 건물의 보존등기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과 관련된 내용이다. 타당한 것은?

- ①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하므로,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한다.
- ②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를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 ③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 ④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 ⑤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3】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련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은?

- 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만 한다.
- ②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의 이장이나 그 이웃사람들의 인우보증서도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한다.
-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분실한 경우 신청서의 부분을 제출하여 등기원인증서에 갈음할 수 있고, 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④ 상속인이 등기관리자로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⑤ 채권자가 매수인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도인인 제3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문 4】 등기의무자의 관리에 관한 등기필증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관리자는 등기 신청시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② 관공서가 등기관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 ③ 등기의무자의 관리에 관한 등기가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대위등기와 관련하여 송부받은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를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제출한다.
- ④ 토지가 농지 정리 등으로 환지된 경우 환지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 당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가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 5】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② 신탁법상의 신탁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③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④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 6】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고가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으나 원고승소판결이 있었다면, 등기관리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그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에 “... 본건 건물의 소유권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런 화해조서에 의해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의제자백판결이라도 그 이유(소장사본을 판결서 말미에 첨부한 경우 포함)중에서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 ④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1필의 토지 중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을 받은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그 특정부분에 대한 분필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 7】 공장저당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과 기계·기구의 소유자는 동일하여야 한다.
- ② 목록에 기재된 물건 전부의 설치를 폐지하고 보통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 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 ③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축산시설에 속하는 부동산에 일반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상의 기계·기구 등의 목록을 제출하여 위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 ④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추가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⑤ 꽃 재배시설은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문 8】 다음은 경매에 관한 등기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내용은?

- ①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 ②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신청기입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 ③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되었고 매각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유부분과 토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였으나 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와 토지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토지부분에 대한 촉탁은 이를 각하한다.
- ④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부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상속인을 등기관리자로 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⑤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담의 기입이 부기등기로 되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주등기의 말소 뿐 아니라 부기등기에 대하여도 별도로 말소촉탁을 하여야 한다.

【문 9】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멸실회복등기는 등기부 멸실 전에 자기 명의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공동소유인 부동산은 공동소유자 전원 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동소유자 중의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등기명의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회복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회복등기기간 경과 후에는 등기필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 ⑤ 멸실회복등기기간 중에 접수한 신등기의 신청서는 이를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그 기간만료 후에 등기부에 기재한다.

【문1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의 제출과 관련된 기술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매매계약의 체결일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이후이나 일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당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매매계약의 일부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할 때에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 ③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으로 기재된 경우 별도의 소명자료 없이도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본 계약일자가 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때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11】 특별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 ②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있어 상속인 중의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없다.
- ③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때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 ④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⑤ 미성년자 갑·을 명의의 공유토지를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하여 그들의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한 경우 갑·을 중 어느 일방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문12】 다음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등기절차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재결 일자’를 각 기재한다.
- ② 미등기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 ③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의 날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 ④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관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⑤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문13】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에는 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전채권자를 포함한다.
- ② 채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의 대위권을 다시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를 수리할 수 있다.
- ④ 채권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할 등기 또는 채무자의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에 한한다.
- 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대위채권자에게 그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문14】 경정등기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내용은?

- ①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보존등기가 된 등기부상의 건물표시가 실제의 건물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따로 같은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실제의 건물표시에 부합하는 건축물대장등본과 건물도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다세대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상의 부동산 표시를 착오로 다른 부동산과 서로 바꾸어 기재하여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존등기를 경정할 수 없다.
- ③ 협의분할에 의하여 갑으로 등기할 것을 을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이를 경정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할 수 없고 그 등기를 말소한 다음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소유권의 일부이전으로 할 것을 착오로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잘못 기재되었으나 그 소유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현재의 권리관계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면 전소유자를 경정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문15】 지상권과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상권과 전세권은 모두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설정등기가 가능하다.
- ② 지상권과 전세권은 모두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중복하여 설정할 수 없다.
- ③ 지상권의 지료 및 전세권의 전세금은 모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④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 및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는 모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⑤ 지상권과 전세권은 모두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설정등기가 불가능하다.

【문16】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 ② 증여·교환 등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③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 ④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등기필증을 분실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관의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도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17】 공유물분할등기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건축물대장에 수동의 축사와 주택이 함께 등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그 수동의 축사와 주택에 대하여 1개의 등기부에 수인의 공유로 하는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건축법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을 분할할 수 없다면 공유물분할등기는 할 수 없다.
- ②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분할에 따라 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는 저당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공유자의 상속인들은 먼저 상속등기를 거친 후에만 위 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1필의 공유지를 공유물분할등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토지의 분할절차를 밟은 후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문18】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 문서에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 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정본을 첨부한 경우
- ③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신탁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 ④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 ⑤ 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서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면서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문19】가압류등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가압류등기 후에 가압류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가압류권자가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②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 ③ 가처분권리자와 가처분채무자의 공동신청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④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압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 가압류등기시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정정하는 경우, 등기상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등본이 필요하다.

【문20】등기신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상속개시 후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들 중 1인이 사망하여 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신청서를 반드시 2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 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반드시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⑤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문21】다음과 같은 임차권설정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서가 접수되었다. 등기관이 수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 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
- ② 등기신청서에 차임 또는 임차보증금을 기재하지 않은 임차권설정등기
- ③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목적에 부합하는 임차권설정등기
- ④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
- ⑤ 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문22】등기관이 수리할 수 있는 등기는?

- ① 유언자가 생존 중에 신청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 ②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신청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③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소유명의인이 자기 명의로 신청한 소유권보존등기(단, 등기부 멸실의 경우는 제외함)
- ④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한 자기의 상속지분만의 상속등기
- ⑤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

【문23】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인 갑이 본인 명의로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아 경영하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을 명의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자신은 폐업한 경우, 갑은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을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에 의하여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하거나 갑과 을을 각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④ 근저당권자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그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⑤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문24】지역권설정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요역지의 표시는 지역권설정등기신청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다.
- ②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만에 관한 지역권설정등기가 불가능하다.
- ③ 지상권자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인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④ 1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하는 지역권설정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지역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승역지 관할 수납관서에 매건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문25】미등기상대인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가압류의 등기촉탁이 있어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올바른 업무 처리가 아닌 것은?

- ① 가압류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실행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였다.
- ② 가압류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할 때,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동시에 실행하였다.
- ③ 가압류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가압류권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필통지서를 송부하였다.
- ④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납부되지 않았으나 가압류의 등기촉탁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였다.
- ⑤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한 후에 가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이 있었으나, 직권으로 실행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하였다.

【문26】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등기촉탁이 있었다. 등기관이 수리할 수 없는 것은?

- ①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가압류의 등기촉탁
- ②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가처분의 등기촉탁
- ③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신탁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④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신탁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⑤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가압류의 등기촉탁

【문27】 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등기원인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④ 판결 주문에 등기원인일자의 표시가 없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판결의 확정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분할협의일이다.

【문28】 토지의 수용(단, 수용의 날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2005. 5. 31.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토지의 등기부에 다음과 같은 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었다. 등기관이 위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 ① 2005. 5. 20. 상속을 원인으로 2005. 6. 13.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 ② 2005. 6. 1. 증여를 원인으로 2005. 6. 13.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 ③ 2005. 5. 20. 매매를 원인으로 2005. 6. 13.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 ④ 2005. 6. 1. 교환을 원인으로 2005. 6. 13.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 ⑤ 2005. 5.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5. 5. 30.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문29】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②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 ④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30】 갑 토지에 을 토지를 합병하여 토지의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다음 중 합필등기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갑 토지는 2인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을 토지는 3인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 ② 갑 토지와 을 토지에 모두 가압류의 등기가 있고,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서로 동일한 경우
- ③ 갑 토지와 을 토지에 모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고,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서로 동일한 경우
- ④ 갑 토지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후, 동일한 피담보채권에 의해 을 토지에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 ⑤ 갑 토지와 을 토지에 모두 예고등기가 있고,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서로 동일한 경우

## 【 공탁법 20문 】

【문31】 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을 한 후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는 때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을 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 ④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즉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불수리결정을 할 수 있다.

【문32】 공탁서정정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서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소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 ② 토지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 공탁한 경우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공탁서정정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정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정된 주소를 기재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변제공탁에 붙인 반대급부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이 인가결정을 하면 그 공탁은 인가결정시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문33】 공탁금지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이다.
- ②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담보취소결정 확정일이다.
- ③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로부터 제출된 수탁서를 공탁공무원이 받은 경우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이 중단된다.
- ④ 공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한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 ⑤ 공탁금지금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공탁금지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중단사유가 아니다.

【문34】 변제공탁의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제자가 채무의 본지(本旨)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는 변제공탁할 수 있다.
- ② 채권자가 미리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내용에 따른 현실제공을 한 후에야 변제공탁할 수 있다.
- ③ 지참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하고자 하는 시기에 채권자 기타의 변제수령권자가 변제의 장소인 채권자의 주소에 부재중이어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공탁할 수 있다.
- ④ 채권자가 무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공탁할 수 있다.
- ⑤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공탁할 수 있다.

【문35】 사업시행자가 갑 소유 토지(을의 근저당권 등기됨)의 토지 수용보상금 1억원을 갑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갑의 지급 거절로 토지수용보상금 1억원을 갑을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을 한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병이 수용의 개시일 전에 명의신탁 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수용의 개시일 후에 그 확정판결에 따라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병은 그 확정판결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② 수용의 개시일 전에 피공탁자 갑이 사망하고 수용의 개시일 이후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소유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④ 피공탁자 갑은 근저당권자 을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⑤ 피공탁자 갑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갑의 채권자 정과 무가 각각 1억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공탁공무원이 사유신고를 하였더라도 근저당권자 을은 공탁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36】 공탁물출급·회수청구절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일괄청구의 청구서는 출급·회수별, 공탁물별, 청구사유별로 작성한다.
- ②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2항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일괄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③ 공탁금계좌입금신청인은 먼저 공탁물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일 필요는 없다.
- ⑤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한 보증지급은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동일인임을 입증하는데 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문37】 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는가를 묻지 않으므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도 변제공탁할 수 있다.
- ②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판결이 확정된 손해보상금에 관해서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과거 수개월분의 손해보상금과 장래 수개월분의 손해보상금을 일괄하여 변제공탁할 수 있다.
- ③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 ④ 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변제공탁금 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38】 공탁물을 출급청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음 중 그와 같은 서면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공탁자를 확정적으로 지정한 변제공탁의 경우 별도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은 불필요하다.
- ②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승낙서면을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도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하는 때에는 별도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④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도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 ⑤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문39】 다음 중 공탁소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 ② 재판상 보증공탁을 할 공탁소에 관하여는 담보제공자가 임의로 정한 공탁소에 공탁하면 된다.
- ③ 채권자가 다수이고 각 채권자의 주소에 따라 공탁소를 달리하는 경우 당해 채권이 가분채권이더라도 채권자 중 1인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 ④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보상금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 ⑤ 변제공탁의 토지관할 위반은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거나 출급청구를 한 때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당초부터 유효한 공탁이 된다.

【문40】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양도·질권설정 등의 임의처분은 물론 전부·추심명령 등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 ⑤ 조합재산을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합유자 전체의 명의로 공탁한 경우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유자 전원의 이름으로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문41】 갑이 을에게 건물을 명도하고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하도록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갑이 을을 피공탁자로 한 담보공탁을 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예규, 선례에 의함)

- ① 을은 위 확정 판결을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는 없다.
- ② 을은 갑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면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으나, 별도의 담보취소결정이 필요하다.
- ③ 을이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채권질권의 실행방법에 따라 공탁자 갑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얻어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한다.
- ④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적법하게 제3자에게 양도된 이후에는 피공탁자 을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없다.
- ⑤ 피공탁자 을이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담보권 실행 요건을 갖춘 때에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문42】 공탁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이를 사법상의 임치계약으로 보는 사법관계설과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보는 공법관계설이 있고,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공법관계설의 입장에 있는 것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공법관계설의 입각한 공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출급청구권자는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 ② 공탁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진정한 청구권자는 다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소멸의 효과를 가져온다.
- ④ 공탁사무처리자로서의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인정될 수 없다.
- ⑤ 출급청구권자는 공탁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43】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면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은 소멸한다.
- ② 피공탁자 이외에 출급청구인의 양수인, 전부채권자, 추심채권자 및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일반채권자도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③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공무원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공탁불수락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공탁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철회는 물론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도 취소할 수 없다.
- ⑤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저당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소멸한다.

【문44】 공탁시 첨부서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수용으로 인한 변제공탁시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할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에 한한다.
- ③ 공탁자에 대한민국 내 영업소설치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회사인 경우 그 외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을 받은 대표자자격 증명서면을 제출하면 된다.
- ④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이다.

